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제 170회 제1차 정례회

▣ 일 시 : 2012. 7. 3 [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안
- 도시관리국 소관(일반회계, 특별회계)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 2012년 7월 3일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2011.7.14. 법률 제10827호)제134조제1항
- 지방재정법(2011.8.4. 법률 제10991호)제51조
- 지방재정법시행령(2012.3.26. 대통령령제23674호)제59조

5. 도시관리국 소관

1)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 비율 (%)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예비비					
계	11,503,462,000	0	321,566,000	20,000,000	11,845,028,000	8,487,702,498	1,909,108,670	1,448,216,832	12.2
주택과	484,039,000	-	-	-	484,039,000	432,758,526	-	51,280,474	11.0
도시 계획과	544,973,000	-	-	20,000,000	564,973,000	250,748,092	245,340,000	68,884,908	12.2
도시 경관과	589,013,000				589,013,000	570,592,390		18,420,610	3.1
건축과	222,380,000				222,380,000	206,767,140		15,612,860	7.0
지적과	1,006,418,000				1,006,418,000	701,426,200		304,991,800	30.3
공 원 녹지과	8,656,639,000		321,566,000		8,978,205,000	6,325,410,150	1,663,768,670	989,026,180	11.0

(1) 개요

- 예산현액 : 118억 4,502만 8천원
- 지출액 : 84억 8,770만 2,498원
- 이월액 : 19억 910만 8,670원
- 집행잔액 : 14억 4,821만 6,832원 - 불용율 12.2% (2010년도 : 8.4%)
(마포구 일반회계 2011년 불용비율 7.2%)

(2)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

○ 사고이월 (1건)

▶ 공원녹지과 : 3억 2,156만 6천원

- 1)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인한 재설계 및 동절기 부실시공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 3억 2,156만 6천원

○ 예비비 (1건)

▶ 도시계획과 : 2천만원

- 1)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2011년도 해피 하우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구 사업비 부담금 처리비 부족분 : 2천만원

2)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구분	계	사유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잔액
계	1,448,216,832	86,000,000	190,848,792	1,090,562,112	80,805,928
주택과	51,280,474	0	22,065,000	28,183,474	1,032,000
도시계획과	68,884,908	0	8,121,000	43,524,908	17,239,000
도시경관과	18,420,610	0	5,550,000	12,870,610	0
건축과	15,612,860	0	3,714,000	11,898,860	0
지적과	304,991,800	86,000,000	60,580,000	158,288,190	123,610
공원녹지과	989,026,180		90,818,792	835,796,070	62,411,318

□ 집행잔액 사유별 구분

○ 집행잔액 : 14억 4821만 6,832원 - 불용비율 12.2%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 8,600만원 - 6%

▶ 예산절감 : 1억 9,084만 8,792원 - 13.2%

▶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등) : 10억 9,056만 2,112원 - 75.3%

▶ 보조금 집행잔액 : 8,080만 5,928원 - 5.5%

3)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현황

(단위: 원)

부 서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11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주택과	공동주택 시설 사업 지원 및 홍보(사무관리비)	2,420,000	910,000	-	1,510,000	62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사무관리비)	24,150,000	12,384,600	-	11,765,400	49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	14,000,000	7,613,000		6,387,000	46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민간자본보조)	14,000,000	4,690,000		9,310,000	67
	공동주택 안전점검(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450,000	9,676,036		2,773,964	22
	기본경비(사무관리비)	57,985,000	46,208,650		11,776,350	20
도 시 계획과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사무관리비)	19,482,000	12,001,000	-	7,481,000	38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수립 용역(시설비)	298,678,000	79,260,000	-	34,478,000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사무관리비)	8,085,000	0	-	8,085,000	100
	Happy House 시범사업(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0,000	11,103,942	-	8,896,058	44
도 시 경 관 과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사무관리비)	9,480,000	4,190,000	-	5,290,000	56
	불법광고물 정비(사무관리비)	13,176,000	9,948,670	-	3,227,330	24
건축과	건축심의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	14,768,000	9,158,500	-	5,609,500	38
	공공시설공사설계용역및공사 관리(사무관리비)	1,100,000	0	-	1,100,000	100
	기본경비(사무관리비)	55,239,000	47,832,260		7,406,740	13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292,000	5,301,660	-	2,990,340	36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사무관리비)	28,001,000	19,655,900	-	8,345,100	30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사무관리비)	176,647,000	86,222,400	-	90,424,600	51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사무관리비)	18,588,000	6,587,850	-	12,000,150	65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공공운영비)	218,827,000	95,587,880	-	123,239,120	56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사무관리비)	12,692,000	7,780,470	-	4,911,530	39
	업무추진비(기타 보상금)	3,000,000	0	-	3,000,000	100

부 서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11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공 원 녹지과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8,920,000	119,779,670	-	19,140,330	14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사무관리비)	7,320,000	2,180,200	-	5,139,800	70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공공운영비)	33,145,000	23,757,630	-	9,387,370	28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	70,000,000	59,738,530	-	10,261,470	15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화장실 개선(시설비)	500,000,000	410,070,980	-	89,929,020	18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시설비)	1,241,800,000	905,347,920	-	223,536,410	18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시설비)	540,000,000	457,308,800	-	82,691,200	15
	인력운영비(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28,453,000	506,240,850	-	122,212,150	19

4)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주요사업 현황 (단위: 원)

부 서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2011 이월액	불용액	이월사유
명시이월 : 10억 5천만원						
공 원 녹지과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시설비)	1,631,201,000	519,709,210	1,046,100,000	65,391,790	2011.9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연도내 사업기간 부족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시설부대비)	12,543,000	7,884,700	3,900,000	758,300	2011.9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연도내 사업기간 부족
사고이월 : 8억 5,910만 8,670원						
도 시 계획과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수립 용역	298,678,000	79,260,000	184,940,000	34,478,000	시보조금이 4월에 교부되고, 사업기간(2011.7.1-2012.6.30)이 장기 소요 됨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용역	60,400,000	0	60,400,000	0	상위계획인 진흥계획승인 지연 및 타지구 진흥지구 계획간 정합성을 위한 서울시 통합지침 마련 필요에 따라 준공기한 연장(2012.12.31)
공 원 녹지과	생활권 주변 녹지 확충(시설비)	1,241,800,000	905,347,920	112,915,670	223,536,410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생활권 주변 녹지 확충(시설부대비)	4,000,000	2,350,000	853,000	797,000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시설비)	1,061,300,000	479,589,030	498,300,000	83,410,970	특별교부금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시설부대비)	5,100,000	3,060,000	1,700,000	340,000	특별교부금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5)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원)

부 서	단위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집 행 잔액	예비비지출사유
도 시 계 획 과	Happy House 시범사업(공기 관등에 대한 대 행사업비)	20,000,000	20,000,000	11,103,942	8,896,058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 2011년도 해피하우스 시범 사업 ' 추진에 따른 우리 구 사업비 부담금 처리비 부족분

6)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 총괄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액	비고
도시계획과	31,535,000	31,535,000	-	-	31,535,000	210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7)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결산 총괄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고
		계	조성액	사용액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과)	270,615,131	304,757,035	572,882,275	268,125,240	575,372,166	옥외광고물 사업 등

6. 검토의견

○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비비 포함)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4,156만 6천원 포함 118억 4,502만 8천원으로 이중약71.7%인 84억 8,770만 2,498원이 지출되었고, 19억 910만 8,67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12.2%에 해당하는 14억 4,821만 6,832원으로 2010회계연도 불용비율 8.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 2010회계연도에도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 주택과 불용비율은

- 공동주택 시설 사업 지원 및 홍보(사무관리비) 151만원 : 62%
-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사무관리비) 1,176만 5,400원 : 49%
-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 638만 7천원 : 46%
-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민간자본보조) 931만원 : 67%

▶ 도시계획과 불용비율은

-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사무관리비) 748만 1천원 : 38%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사무관리비) 808만 5천원 : 100%
- Happy house 시범사업(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89만 6,058원 : 44%

▶ 도시경관과 불용비율은

-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사무관리비) 529만원 : 56%
- 불법광고물 정비(사무관리비) 322만 7,330원 : 24%

▶ 건축과 불용비율은

- 건축심의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 560만 9,500원 : 38%
- 공공시설공사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사무관리비) 110만원 : 100%

▶ 지적과 불용비율은

-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사무관리비) 9,042만 4,600원 : 51%
-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사무관리비) 1,200만 150원 : 65%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공공운영비) 1억 2,323만 9,120원 : 56%
- 업무추진비(기타 보상금) 300만원 : 100%

▶ 공원녹지와 불용비율은

-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사무관리비) 513만 9,800원 : 70%
 -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공공운영비) 938만 7,370원 : 28%
-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주요 불용내역 세부내용은 4~5쪽의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주요사업

※ 명시이월 : 10억 5천만원

▶ **공원녹지과 : 10억 4,610만원**

- ① 2011.9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연도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10억 4,610만원 명시이월 됨.
- ② 2011.9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연도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390만원 명시이월 됨.

※ 사고이월 : 8억 5,910만 8,670원

▶ **도시계획과 : 2억 4,534만원**

- ①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노고산동 106번지 일대)계획 수립 용역 : 1억 8,494만원
 - 서울시보조금이 2012. 4월에 교부되고, 사업기간이 2011. 7. 1~ 2012. 6. 30일까지 장기 소요 되어 1억 8,494만원이 사고이월 됨.
- ②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용역 : 6,040만원
 - 상위계획인 진흥계획승인 지연 및 타자치구 진흥지구 계획간 정합성을 위한 서울시 통합지침 마련 필요에 따라 준공기한을 2012. 12. 31일까지 연장하게 됨에 따라 6천 4십만원이 사고이월 됨.

▶ **공원녹지과 : 6억 1,376만 8,670원**

- ① 생활권 주변 녹지 확충(시설비, 시설부대비) : 1억 1,376만 8,670원
 - 생활권 주변 녹지 확충을 위한 도화2길변 쉼터(도화동 347-116호) 조성 사업 보상 지연(소유자와의 매매가 관련 협의)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1억 1,291만 5,670원과 시설부대비 85만3천원이 사고이월 됨.
- ②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시설비, 시설관리비) : 5억
 -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망원유수지 축구장 증설공사(축구장 1개=> 2개로 증설) 서울시특별교부금이 2011.12.25일 늦게 배정되어 시설비 4억 9,830만원과 시설부대비 170만원이 사고이월 됨.

○ 예비비 지출사업

▶ 도시계획과 : 1,110만 3,942원

- ①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2011년도 해피 하우스 시범사업(성산1동 전체)” 추진에 따른 우리 구 사업비 부담금 처리비 부족분을 예비비 1,110만 3,942원으로 지출.

○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 도시계획과 : 3,153만 5천원

- ① 21C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조성 사업비 예산현액 3,153만 5천원중 지출액은 없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됨.

○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 도시디자인과 : 5억 7,537만 2,166원

- ① 옥외광고물 사업 등 - 2010년도 이월된 2억 7,061만 5,131원의 기금과 2011년도에 새로 조성된 5억 7,288만 2,275원의 기금이 증액되어 정비기금 예산현액 8억 4,349만 7,406원중 2억 6,812만 5,240원이 지출되어 5억 7,537만 2,166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의 경우 예산 성립후에 증감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 사유로 공원녹지과 3억 2,156만 6천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예비비 도시계획과 2천만원으로 총계 3억 4,156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2010회계년도 불용비율 8.4%비해 2011회계연도 불용비율은 12.2%로 불용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단위사업별로도 20%이상 불용비율을 보면, 2010회계연도 19건에서 2011회계연도 22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일부 불용액의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시 일부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일부 아파트 단지는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공동주택 사업 대상 아파트로 중복하여 선정하는 사례가 있어 공동주택 사업 대상 선정시 보다 세밀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며 이미 선정에서 탈락한 아파트 단지에도 사업의 다변화 등을 꾀하여 다음해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함.

도시계획과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노후 단독주택 유지관리에 적용하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을 국토해양부 주관하에 LH공사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간단한 집 부속품 수리 및 위생시설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무상수리 지원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게 되면서 남는 집행잔액을 국토해양부에 반납을 하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분야의 확대 및 방법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에게 해피하우스 유지관리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도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2011.12.30. 서울시마포구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불용액 3,153만 5천원이 2012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 편성됨.

도시경관과는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대형건축물(연면적 10,000㎡이상)에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으로 선정 단계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건축허가권자에 의한 “미술작품 공모대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미술계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기도 한 공모대행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건축물 허가, 승인, 착공시(주택사업승인 등) 건축주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지도를 하여 “미술작품 공모대행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보다 많은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건축과는 건축설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 2005년도부터 적산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물가정보 등 추가 변동사항 발생시 새로운 건축설계 프로그램을 UP-DATE 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최근 타 부서에서 건축과에 설계 의뢰한 사항 중 적산프로그램을 이용 할 소규모 단순 설계대상 사업이 없어 불용된 예산임.

지적과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사무관리비)는 공공용지 분할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국·공유토지 상호 점유재산 일제조사 사업과 중복되고, 20M이상 도로에 편입된 구 소유 행정재산(도로)은 서울시에서 이관 요청 할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공공용지 분할대상에서 제외(필지수 축소 : 378필지=) 62필지)됨에 따라 예산을 축소해 지출하면서 불용된 예산임.

도로명 및 건물주소 활용(공공운영비)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안내 등기 우편발송요금을 절감한 비용으로 도로명 고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동주민센터 통장이 주민들에게 직접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전달함으로써 실제 우편요금의 5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 우수사례임.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는 관내 산림공원 녹지대인 흥제천 및 불광천 하천변에 대한 공사 낙찰잔액 및 환경보전비 정산에 따른 감액 등 예산절감액임.

또한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시설비)는 “도화2길변 쉼터(도화동 347-116호)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차량운전자의 시인성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쉼터를 조성하고자 건물·토지 보상 잔액 및 공사 낙찰 잔액으로 불용된 예산임.

- 특히 사고 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초기부터 집행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의회 사전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고이월을 집행부서에서는 구의회 사전의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 예측을 통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